

검 토 보 고

1997. 3. 13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 : 1997년 3월 6일

○ 회 부 : 1997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- 정신보건법 제29의 규정에 의거
- 정신보건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
- 정신과 전문의사와 법조인, 정신보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등이 참여하는 정신보건 심의위원회와 그 안에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

4. 주요 골자

-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: 위원장포함 5인이상 15인이내, 임기2년
(위원장 : 행정부지사, 부위원장 : 위원중 호선)
- 기능 :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, 정신질환자 처우개선 및 퇴원과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
-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: 위원장포함 5인, 심의위원중 도지사가 임명
(위원장 : 심의위원회 부위원장, 부위원장 : 심판위원중 호선)
- 기능 : 심의위원회에서 회부된 정신질환자 입·퇴원의 심사
- 각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,
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
5. 검토보고

충청북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(안)을 검토한 바
본 조례(안)은

- 정신보건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
- 충청북도 정신보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-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보건 향상을 위한
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